

선장이 통보하여야 할 사항(제6조제2항관련)

이상한 기상의 종류	통보하여야 할 사항
1. 열대성 폭풍우 또는 기타 풍속이 매초 24.5미터 이상의 바람을 동반한 폭풍우	가. 일시 및 위치 나. 3시간동안의 기압변화의 상황 다. 풍향(진방위에 의한다)·풍력 및 풍속 라. 파도의 진행방향(진방위에 의한다)·주기·파장 기타 해면의 상태 마. 선박의 침로(진방위에 의한다) 및 속력
2. 배의 상부구조물에 얼음을 얼게 하는 강풍	가. 일시 및 위치 나. 기 온 다. 표면 물온도 라. 풍향·풍력 및 풍속
3. 표류물 또는 통상 표류해역 외에 있는 유빙 또는 빙산	가. 일시 및 위치 나. 형 상·표류 방 향(진방위에 의한다) 및 표류속도
4. 침몰물	가. 일시 및 위치 나. 형상 및 깊이
5. 기타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줄 염려가 있는 이상한 기상	가. 일시 및 위치 나. 개 요